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재나1001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23 자 2023재나10019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19나5477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3. 12 선고 2017가단202825 판결

전문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휘

담당변호사 김익현, 안은성

변론종결 2024. 3. 21.

판결선고 2024. 5. 23.

제1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3. 12. 선고 2017가단202825 판결

재심대상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19나54779 판결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항 소 취 지 및 재 심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66,11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2021. 3.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166,11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2021. 3.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아래 2항의 예비적 항소취지와 같이 사해행위취소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위적으로 제1의 가.항과 같은 청구(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예비적으로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E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3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6,33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재심청구취지1)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4,11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P 대리점으로 휴대폰 단말기 판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C에 의해 휴대폰 단말기를 절취당한 절도범죄의 피해자이고, C는 2006. 7.경부터 2015. 7.경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E은 C의 어머니, D는 C의 여동생으로 F의 사업자명의인, 피고는 D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2017.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부당이득금 170,431,2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예비적으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134,100,000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3. 1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02825 판결).

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21. 8. 26.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나54779),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21. 12. 30. 상고기각이 되었으며(대법원 2021다277433), 그 상고기각 판결은 같은 날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23. 7. 5.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15 내지 1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 및 피고의 처, 그 가족들을 전부 범죄수익은닉죄로 형사고소하였는데, 재심대상판결은 본범 C를 제외한 피고 등 가족들에 대한 검사의 2016. 12. 30.자 불기소처분(행정처분)의 기초 위에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를 재고소하자 검사는 기존의 불기소처분을 파기하고 2022. 7. 4. 피고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고, 2023. 6. 8. 피고는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재심대상판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변경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판결의 기초된 행정처분이 민사판결 뒤에 변경된 경우)의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E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9. 6. 21.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하였으나 이후 E의 유죄판결을 기초로 2023. 5. 11. 2심에서는 원고가 대부분 승소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3. 8. 31.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고가 피고의 처인 D 및 피고의 장인인 O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23. 11. 28. 1심에서 원고가 대부분 승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① 주장에 대한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하여진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라고 함은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이 아니라, ‘재심대상판결이 판단의 기초로 삼은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바뀐 때를 의미한다.

그런데,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까지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단 불기소처분되었다가 후에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여 종전의 불기소처분이 ‘소급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그 기소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었다 하여도 이는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0855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불기소처분되었다가 후에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만 가지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뒤에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E, D, O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민사소송의 판결 내지 재판이 재심대상판결에서 판단의 기초로 삼은 재판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민사소송 결과만 가지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명재권, 판사 이민수, 판사 송승용

별지

1) 재심소장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를 종합하여 재심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선택한다.